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후위기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05대(5등급 325대, 4등급 274대, 건설기계 6대)

※ 차종 및 연식별 차등지원, 예산 상황 등에 따라 해당물량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음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2026년도까지 지원 예정(27년부터 사업 종료)

□ 접수기간 : 2026. 3. 4.(수) 9:00 ~ 3. 24.(화) 18:00

□ 대상자 선정 : 2026. 4월 초 ※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통보

□ 신청방법 : ① 인터넷※[별첨2]참고 ② 방문 ③ 등기우편(팩스 불가)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제출(팩스 063-279-4599 및 방문접수)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3.24.(화)까지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② 방 문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등기우편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조기폐차 담당자

※ 일반우편 불가, 등기우편 접수는 3월 24일(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어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를 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폐차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보조금 청구방법 : ① 팩스 ② 방문

① 팩스 : 063-279-4599

※ 팩스 접수 시 별도 확인 필요, 접수 서류 누락 등에 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② 방문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1층)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폐차(자진말소)만 보조금 지급**(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 반드시 폐차 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발급

※ 보조금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기한 엄수)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기한 내 미청구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서식6] 및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중고차 제외**))

□ **대상차량** ※ 배출가스 등급조치는 [별첨1] 참고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 출고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신청가능**, 5등급은 **경유 외의 연료도 포함**

②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지원기준 : 다음 ①~⑤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기간)접수일 기준 전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기준)** 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서식2]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④ (중복지원여부)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확인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차량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제출서류 ※ 위임 관련 서류는 대상자 선정 후 폐차시 서류 제출

필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서식1]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개 인) ③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③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제출)
	(법 인) ③ 법인사업자등록증 ④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⑤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신청) ③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④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⑤ 위임장

해당자	(우선지원) 우선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택배차량 폐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제출 ▶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증명서 제출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 증빙서류(시스템 확인 불가시에만 제출)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장애등급 확인 서류 제출
	(추가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 폐차 청구서 제출일까지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회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
	▶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폐차 청구서 제출일까지만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①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② 위수탁 계약서 제출 ③ 법인사업자증명서

○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3개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 1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물량배정 및 선정방법

□ 사업물량 배정 : 일반 70%, 우선지원 30%

구 분	계	일반(70%)	우선지원(30%)
계	605	423	182
5등급	325	227	98
4등급	274	192	82
건설기계	6	4	2

□ 선정방법

※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1인 1대 우선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차량 지원(1인당 최대 2대 신청 가능)

※ 5등급 자동차 '26년도까지 지원예정

※ 등급별 지원 수요에 따라 선정 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일 반 :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우선지원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해당)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기타사항

○ 우선지원 물량이 배정물량에 미달할 경우 : 우선 선정 후 일반물량 선정

○ 우선지원 물량이 배정물량을 초과할 경우

- 초과물량을 일반물량에 포함하여 일반물량으로 선정

3.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구 분		상한액 (1차+2차, 만원)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2차 보조금 미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3)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지게차, 굴착기 〉

※ 지원금액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 ×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구 분	총중량	상한액 (1차+2차, 만원)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u>중고차 2차 보조금 지원 불가</u>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 금액 및 조건 상세

○ 조기폐차 1차(폐차) 보조금 지원

구분	5등급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의 100%	차량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기준가액의 100%	차량기준가액의 100%

○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u>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u>	- 총중량 3.5톤 미만의 <u>전기·수소·하이브리드</u>(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u>이륜차 및 상품용*</u>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음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 (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을 적용 기준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는 '06년식 자동차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액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액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 /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서식3]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 같이 제출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 해당차량 ※ 저소득층 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사안별 저소득층 차량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소상공인 해당차량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6개월 소유 예외 적용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ex) A,B 공동명의 차량 폐차시 → A가 소상공인 보조금 신청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A(소상), B(비소상)"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4.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①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③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④ 보조금 지급	⑤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⑥ 2차 보조금 지급
시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통보 후 폐차 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문자)

*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 전주소식 → 공고 → 고시/공고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발급[서식2]

※ 반드시 폐차 전 공업사 현장확인 또는 협회 온라인 검사(<https://escar.or.kr/>) 후 발급

③ 폐차 후 보조금 신청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서식3]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사진 포함*)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 폐차 전 발급, 수수료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14,000원/대 지원 * 사진 : 앞, 뒤, 좌, 우 (총 4매)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 폐차(자진말소)만 가능(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지급 불가능) 4.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세목별X,국세X) 5.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1.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 서류 1부. → 폐차 후 발급 2.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5]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3. 소상공인확인서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서류 1부. 4. 자동차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1부.

④ 보조금 지급 : 전주시 → 소유주(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

※ 청구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⑤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신청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지급청구서 1부.[서식4]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세목별X,국세X)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공동명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5]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⑥ 보조금 지급 : 전주시 → 소유주(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전주시 결정에 따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6년까지만 사업추진(2027년부터 사업 종료)**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하거나 **차량 수출말소, 차량 초과말소** 등은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중고차)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 보조금 지급 전 소유자 변경 시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2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 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 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5등급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4등급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포함)와 신차(중고포함) 구매 자동차(지게차, 굴착기 포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대상자는 폐차 청구일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및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6. 주요 문의 사항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3. 지원금액 및 조건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1차 청구 기준(2차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당시 기준으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질문)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거 같아요!

- (답변) ①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 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①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① 공업사 현장확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또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 서류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1차 보조금(2차 보조금 포함)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 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구청 청소위생과 환경관리팀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붙임 1. [별첨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2. [별첨2] 조기폐차 온라인 접수방법
3. [별첨3] 자동차 종합정비 조합현황(정상가동여부 확인서 발급처)
4. [별첨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5. [서식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6. [서식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7. [서식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8. [서식4]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9. [서식5] 위임장
10. [서식6] 출고지연확인서

별첨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DPF 부착여부)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①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②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③차량번호 입력	

4	④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⑤휴대폰 인증	
5	⑥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별첨2 조기폐차 온라인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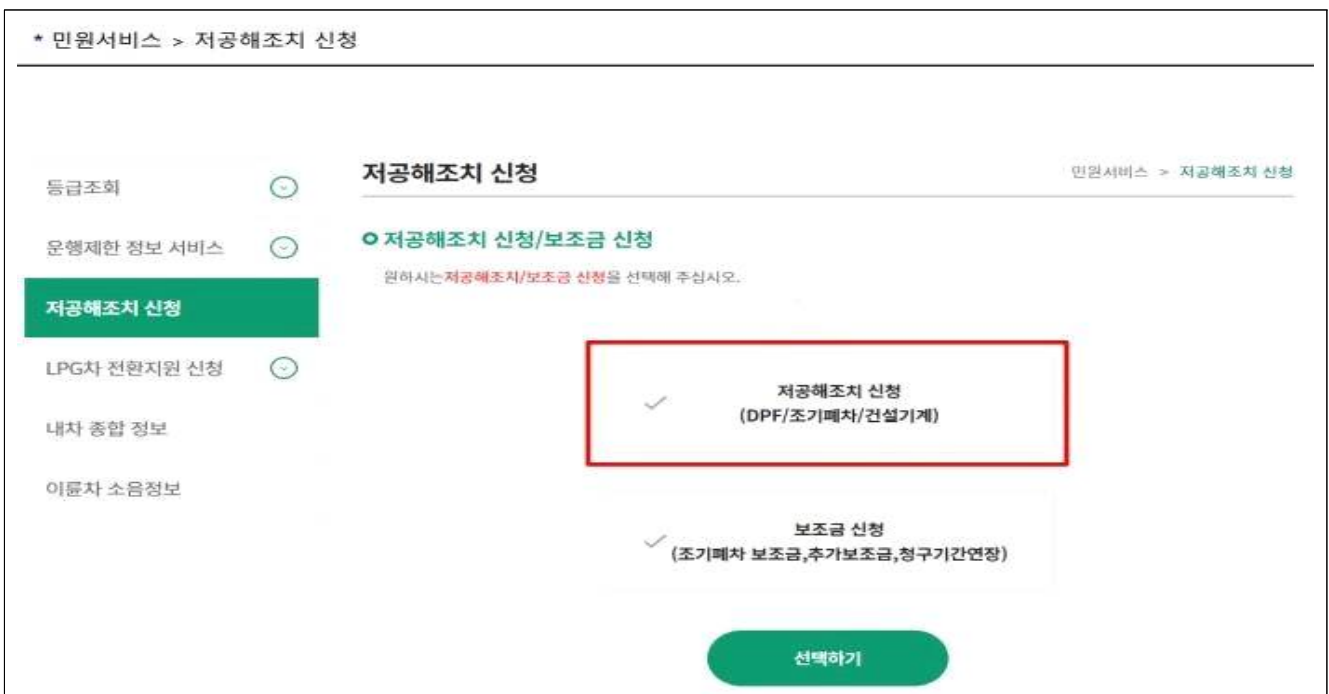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③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 ※신청차량 및 미개발정차 공간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 초기배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번호 + 120)
- ※저공해조치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증빙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자명			
*휴대전화(대표자)	010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
※ 차량조회버튼 클릭후 차량검색 차대번호링크를 선택하시면 신청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 초기배차		
취약계층 ● /소상공인 ●	☐ 취약계층 여부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 소상공인 여부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체크한 경우 초기배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적용 불가 (문의처 : 1577-7121) ※ 첨부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 또는 PDF(*.pdf), 이미지(*.jpg, *.jpeg, *.png)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차명			
연식			
소유자명			
주소			
신청지자체			
전화번호	[선택]		
팩스번호	[선택]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본인은 신청차량의 정보(배출가스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20-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초기배차 접수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취소

저공해신청

별첨3 자동차 종합정비 조합현황

NO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1	광진기계 공업사	213-1700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30-45
2	전주자동차공업사	213-2135	전주시 덕진구 야전1길 15
3	천일그랜드모터스	213-1001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3
4	(유)제일정비 (대형)	211-8991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73
5	(유)전주월드컵자동차공업사	211-6644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
6	(유)현대자동차HD써비스	212-4040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91-5
7	안전자동차공업사	211-4400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57
8	(유)CS자동차공업사	211-6669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로 12
9	(유)전일모터스	211-0048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3길 14
10	(유)혁성자동차공업사	211-8566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76
11	한성자동차공업사	211-5154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8
12	(유)서광자동차공업사 (대형)	214-8080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37-4
13	진보자동차공업사 (대형)	211-6437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42
14	(유)미성자동차공업사	214-8283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 1길 1
15	(유)한솔자동차공업사	211-4971	전주시 덕진구 구주길 21
16	(유)코리아모터스	212-8888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115
17	서전주현대자동차공업사	213-4972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22
18	삼화정비공업사 (대형)	211-5411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7
19	(주)케이에스자동차공업사	213-0001	전주시 덕진구 상리로 3
20	(유)신한1급자동차정비공업사	211-7077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48
21	전주탄소자동차공업사	212-4940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49
22	서전주서비스	211-4100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131
23	1급KB자동차공업사	282-2800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88-27
24	수자동차공업사	211-8188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19-23
25	서전주현대서비스(유)	714-3888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38-1
26	(주)화평자동차공업사	212-8084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68-5

별첨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내선 1231)>

-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검사 불합격 시 재등록 또는 공업사에서 차량상태 확인 (별도비용 발생) 바랍니다.
-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추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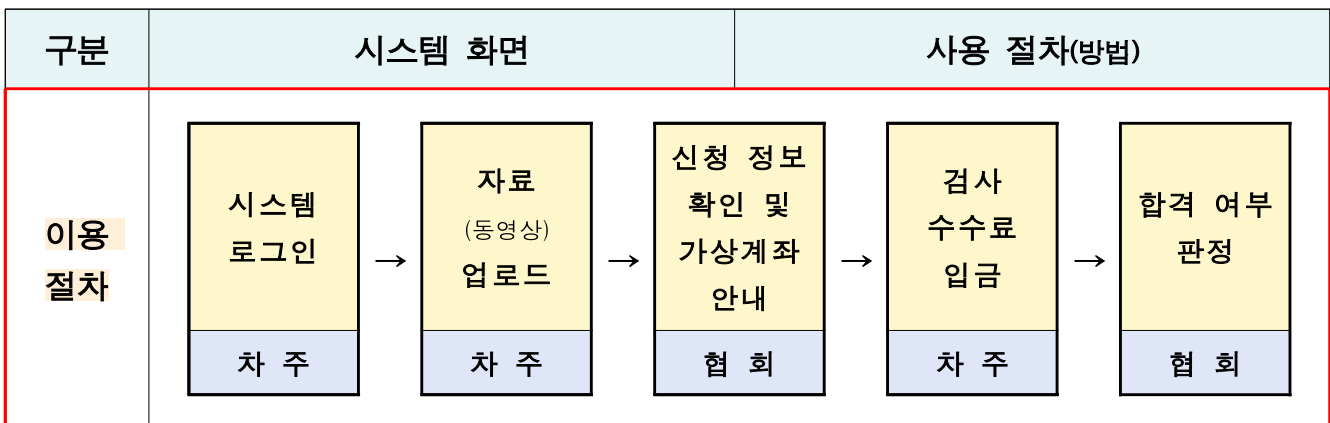
□ 조기폐차 대상차량 시스템 : www.esca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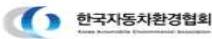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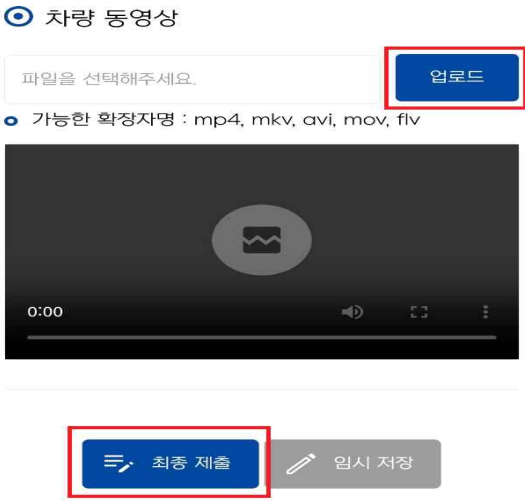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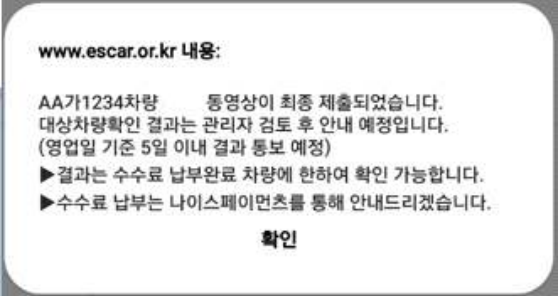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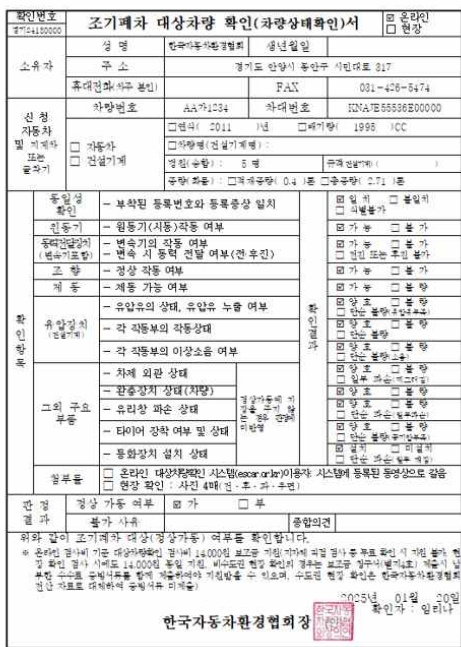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Mecar등록 차량번호 차량번호 입력 초기폐차 신청자 성함 성함 입력 초기폐차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 (-제외) 인증번호 전송 LOGIN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 및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결과확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대상차량 확인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님의 보조금 신청 차량 목록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연식 2011 •폐차장 미지정 •보조금 산정일 2024-01-15 •입금 여부 미입금 •사진 등록 일자 •임시 저장 일자 •검사 완료 일자 진행상태 : 동영상등록 필요 동영상등록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④ 차량 정보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Web발신] AA가1234 고객님의, 안녕하세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기폐차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 입니다. *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바랍니다. 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WhdX2412197149 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4,000원 가맹점 대표전화: 031-689-3073 ** 상기 메시지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요청에 따라 나이스페이먼츠(주)에서 대행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수신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맹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신 경우 삭제 부탁 드리며, 오발송으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검사 불합격 시>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시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NICE PAY SMS 링크결제 서비스 주문 정보를 확인 후, 구매 요청하신 내역과 일치하실 경우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이용해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내역과 상이할 경우, 가맹점 대표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가맹점 대표전화 : 031-689-3073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판매자명: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매자명: AA가1234 결제수단: 가상계좌 최종 결제 금액: 14,000 원 결제하기	 가상계좌 발급 완료 입금 가상계좌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상품금액을 입금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상품금액: 14,000원 판매자명: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결제수단: 가상계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구매자명: AA가1234 입금계좌: 28481535318759 계좌은행: 우리은행 입금기한: 2025-02-17(월)까지 결제요청금액: 14,000 원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확인번호 표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정보: 김명,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휴대전화: 011-426-8474, FAX: 031-426-8474, 차량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INA7B55536E00000 신체검사 결과: [] 자동차, [] 전설기 확인란: 동인성, 진동기, 동력장치, 조향, 제동, 유압장치, 기타 부속 등 정밀검사 결과: 정밀검사 여부, 불량 사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초기페차 알림톡 도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AA가AAAA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결과 조기폐차 "가능"입니다. ▶ 대상차량확인서는 PDF저장 또는 팩스 전송이 가능하며, 이후 행정(폐차,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70-4353-2011, 031-689-3073(내선 1231) ESCAR바로가기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ESCAR 바로가기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정상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서식1] ※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 4등급 ☐ 5등급 ☐ 건설기계				
소유자	① 성명(법인명) (공동명의로 모두 기재)	② 생년월일 (공동명의로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생년월일 : _____ - ____ - *****			
	③ 주소(사용본거지)			
	④ 휴대전화			
	⑤ 차량번호	⑥ 차명 (건설기계명)		
	⑦ 총 중량	☐ 3.5톤 미만 ☐ 3.5톤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 미해당		
체 크 필 수	차 량 구 매	☐ 신차 ☐ 중고차 ☐ 구매 의사 없음		
	우 선 지 원 ※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택배차량 ☐ 어린이통학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저소득층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5등급) ☐ 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 해당없음		
	추 가 지 원	☐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공 통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로는 모두 제출 3.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및 위임장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3.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없 음
해 당 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해당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4. 우선지원 대상 증빙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본인은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향후 5년간 보유 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2] ※ 반드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폐차 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온라인 ☐ 현장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확인 항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인 결과	☐ 일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같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후·좌·우면)					
판정 결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3]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공업사 (인)							

[서식3]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폐 차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년 ☐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중량(화물) :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원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폐차(자진말소)만 가능(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는 보조금 신청 불가능)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사진4매 포함) - 폐차 전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현장 확인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반복 불가) 3. 지방세 납세증명서(한달 이내 발급) 1부.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서식5]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8.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서식4] ※ 반드시 공고에서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년 ☐ 배기량()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톤 ☐ 총중량()톤 ☐ 규격(건설기계)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 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 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같음)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서식5]

위임장

수임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인 또는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위임을 주는 자)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차량정보(폐차)	차량번호		차명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임자 : (인)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차량번호(폐차)		휴대전화	
신차 계약차종		사용연료	
출고예정일			
연장 신청 항목 (체크 필수)	☐ 폐차	☐ 신차	
지연 사유			

년 월 일

신청자 : (인)

대리점(제조사) : (인)

※ 첨부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명의자가 다르거나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신차구매 없이 폐차만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후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출고 후 1개월 이내 폐차 및 신차청구 서류 제출해야 함

※ 연장기한 : 2026년 월 일까지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팩스번호 : 063-279-4599